

學父母의 學校經營參與에 대한
學父母 및 學校長의 認識에 관한 研究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孫 俊 基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教授 申 熙 永


2004 年 8 月

016382

孫俊基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 李 泰 鏡 

審查委員 金 濟 相 

審查委員 申 熙 永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 年 8 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1. 교육자치와 단위학교 책임경영	4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14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18
4.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26
5. 선행연구의 고찰	31
III.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34
1. 분석모형 설정	34
2. 조사설계	35
IV. 결과분석 및 논의	40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0
2. 분석 결과	41
3. 종합 논의	77

V. 결론 및 제언	90
1. 결론	90
2. 제언	95
참고문헌	98
Abstract	99
부록(설문지)	102

표 차례

<표Ⅲ- 1>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요구 및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설문지 구성	38
<표Ⅳ-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0
<표Ⅳ- 2> 학칙 제정·개정 심의·자문	41
<표Ⅳ- 3> 학교 예산 결산안 심의·자문	42
<표Ⅳ- 4> 학교교육계획 수립 심의·자문	43
<표Ⅳ- 5>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심의	45
<표Ⅳ-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문	46
<표Ⅳ- 7>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원	47
<표Ⅳ- 8> 학교재량활동 운영 심의·자문	49
<표Ⅳ- 9> 특별활동 운영 심의·자문	50
<표Ⅳ-10>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자문	51
<표Ⅳ-11> 교육자료 선정 심의·자문	52
<표Ⅳ-12> 방과후 교육활동 심의·자문	54
<표Ⅳ-13>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심의·자문	55
<표Ⅳ-14> 방학중 교육활동 심의·자문	56
<표Ⅳ-15> 학생 수련활동 심의·자문	57
<표Ⅳ-16> 초빙교원 임용 심의·자문	59
<표Ⅳ-17> 학교 급식활동 심의·자문	60
<표Ⅳ-18> 지역사회 교육방법 심의·자문	61
<표Ⅳ-19> 학교 운동부 구성, 운영 심의·자문	63

<표Ⅳ-20>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 심의·자문	64
<표Ⅳ-21> 교내 사고, 학교 민원사항 심의·자문	65
<표Ⅳ-22> 학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 심의·자문	67
<표Ⅳ-23> 학교 발전기금 조성의 실제적인 주체	68
<표Ⅳ-24> 학교 발전기금 운용의 실제적인 주체	70
<표Ⅳ-2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책임자	72
<표Ⅳ-2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	74

그림 차례

<그림Ⅱ-1>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모형	13
<그림Ⅲ-1> 분석모형 설정	34
<그림Ⅳ-1>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학교 장, 학부모 인식 분포도	69
<그림Ⅳ-2>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학 교장, 학부모 인식 분포도	71
<그림Ⅳ-3> 학교운영위원 위원장 책임자에 대한 학교장, 학 부모 인식 분포도	73
<그림Ⅳ-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장애 요인에 대한 학교장, 학부모 인식 분포도	75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1995년 9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96학년도에는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고 읍·면 지역 소재 공립학교는 설치를 권장하여 운영되어 왔다. 한편 1997학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사립은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희망교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1999년 8월부터는 사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공동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자체기구의 성격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성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공동체로서의 학교경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 의결하는 자치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학교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인사 그리고 학교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들이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는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세계적 흐름중의 하나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는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담당자들이 학교운영과 교육에 대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단위학교가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관리·인사·재정·교육과

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학교 경영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와 결정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역할이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학교경영체제를 발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그간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학교운영을 보다 민주화·투명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고 학교 내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 여러 학교에서 갈등의 관계에 있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학교에 안겨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현실에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는 어떠한가, 이 요구를 학교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학교경영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와 이 요구를 학교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봄으로써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를 포항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학교장은 이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와 단위학교 책임경영,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관련 이론과 외국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부모의 요구에 대하여 학교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요구와 학교장의 인식과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국내의 선행연구 논문 보고서와 각종 도서를 참고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세기는 지식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교육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21세기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첫째,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자치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방향에서 부각되고 있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둘째, 학부모의 학교경영참여 요구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립 배경, 성격, 구성, 기능, 문제점,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넷째,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와 선진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1. 교육자치와 단위학교 책임경영

1) 교육자치

학부모와 지역사회 및 교육관련 사회단체들의 교육 참여는 학교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는 지역사회 및 가정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으며 친 교육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우리 나라 교육자치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를 대비한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자치는 학자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지만 우리 나라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넓은 의미의 교육자치제는 중앙에서의 교육체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전제로 하고 논의되는 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행정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기구와 시책을 의미하는 것이다.”¹⁾ 라고 지방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분리 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²⁾

이상의 내용에서 교육자치란 넓은 의미에서는 중앙에서의 교육체제를 포함하지만 보통 교육행정의 지역 자율화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공공행정의 개혁 중에서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민 또는 주민이 정부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과 결부되어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볼 수 없으나 선거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이루는 것은 관심

1) 김종철, 한국교육정책 연구(서울:교육과학사, 1990), p.86.

2) 정태범, 교육행정학(서울:정민사,1996), p.208.

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와 이론구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참여와 엘리트 및 참여와 능률과의 가치 조화의 문제라고 제기했다.

우리의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에서 한국의 교육을 군사 문화적 대량생산 이데올로기라고 평하고, 교육현상을 구상하는 각 부분들 교사, 교육행정가, 학생, 학부모, 교육시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학교제도 등 마치 산업사회의 생산 모델처럼 일련의 단속적 구성성분들로서 기능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³⁾

이들의 공통점으로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자치는 중요한 원리가 네 가지 있는데 지방분권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 주민자치의 원리(민중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 자율화, 전문화, 효율화를 실현하는 초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발전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교육 이해 당사자들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교육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단위학교 책임 경영

(1) 단위학교 책임 경영의 발전과정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지난 1955-1980년 기간 동안 미국 교육정책의 주요 의제로 군림해 온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는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염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카네기 보고서를 기초

3) 김인회,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서울: 문음사, 1993), pp.300-301.

로 최근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제도화하여 “제 3의 물결”을 주도했다고 부시(G. Bush) 행정부의 교육개혁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었다.⁴⁾ 최근 “제3의 물결”로서 교육 개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안에 대해 교육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학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제시하는 모형이라고 평가하고 그 적용을 위한 실제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교육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제 교육개혁의 초점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경영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행정은 교육정책 중심의 행정으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미흡하였다. 특히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은 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교육행정의 본질은 그것이 국가수준이거나 지역수준이거나 간에 그 초점을 단위학교와 구체적인 교육의 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시, 명령, 감독, 확인하는 극히 사무적이며, 관리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것이 우리 학교들을 탈 개성화 획일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학교경영도 이러한 교육행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율적 전문적 교육풍토보다는 획일적인 경영방식과 지시전달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과의 폐쇄적 풍토가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경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

4) 이득기, 「주요국의 교육행정 결정과정에서 기초한 한국의 교육정책 모형 개발, 비교교육」, 제4호 (1993. 6), p.209.

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라고⁵⁾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중이다.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문명의 대전환기인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1994년에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1995년 5월 31일 제1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어 1996년 2월 9일과 1996년 8월 20일에 각각 제2차, 3차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제4차 개혁 방안을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개혁 방안은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로의 새로운 문명사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오늘 날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고 새로운 교육의 물길을 열어 놓는 장·단기적인 교육적 종합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교육의 경쟁력을 추진시키는 사회적 동인이 새로운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쟁의 힘을 생산하는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바탕인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압력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의 지양하는 요인이 되게 하였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우리 나라가 도입하게 된 배경을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두 방향에서 대두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을 위한 학교 체제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학교경영구조의 개선의 일환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들었다.⁶⁾

5) 정태범,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서울: 양서원,1998), pp.185-186.

6) 김명수, 「교장의 리더십과 창의적 학교경영 기법」, 학교경영 제12권 제1호, (1999). 1, p.187.

(2) 단위학교 책임 경영의 의의

교육행정 본질은 그것이 국가수준이거나 지역수준이거나 그 초점을 단위학교와 구체적인 교육의 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시·명령·감독·확인하는 것이 극히 사무적이며 관리 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것은 우리의 학교들을 탈 개성화·획일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학교 경영도 이러한 교육행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율적, 전문적 학교 교육 풍토보다는 획일적인 경영방식과 지시 전달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과의 폐쇄적 풍토가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잘 못된 풍토를 개선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경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학교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은 학교중심 경영, 학교자치 관리제,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자칭되고 있는데 그 핵심 요소는 교육과정, 인사, 재정에 대한 단위학교로의 이양과 자율적 경영 그리고 학교경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현행 학교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교 및 학교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경영의 재구조화로서의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장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까지는 외국 학교경영이론의 토착화 노력이 지속되었던 단계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학교현장과 밀착된 학교경영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⁷⁾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일선의 단위학교에 돌아가야 하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

7) 유현숙, 정대화,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경영 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1994. 8), pp.27-30.

위학교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행정 기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사 운영,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 운영 주체에 위임하여 그들이 학교를 자율 경영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⁸⁾ 학교경영 현장의 획일적이고 지시·통제 위주의 경영방식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 참여를 통한 책임성 있는 민주적 학교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단위학교가 한 기관으로서 자율성을 회복하며 개성 있는 학교 경영과 아울러 교사들이 전문적 자율성 보장, 교장·교사 관계를 전문적 수평관계로서 참여의식 확대 그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관점도 조직의 특성과 전문가로서의 재인식이라는 개념적 의미를 지닌다.⁹⁾

이상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단위학교 책임경영이란 단위학교가 경영의 자율권을 가지고 전 구성원들이 참여·협력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 및 실천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단위학교에 대해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학교운영에 대한 책무성도 강조되는 경영체제이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란 기관단위 책임경영제 의미를 가지며 단위학교가 확고한 철학의 정립 하에 인적 교육적 물적 재정적인 운영상의 자율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단위학교가 지는 학교경영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교육운영에 관한 결정을 단위학교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여 학교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또 교장이나 교

8) 노종희,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과제와 전망」, 교육월보 3호 (1995), pp.20-27.

9) 최희선, 「학교단위책임경영제 왜 필요한가?」, 교육월보 3호,(1995. 3), pp.27-30.

사들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교육전문가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 모형

우리 나라에서도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학교경영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위학교 교육의 철학 확립 및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고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 각 주체들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화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충 및 합리적인 운영이 된다고 하며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자율화, 학교교육구조의 개선, 교육재정의 확충 및 합리적 운영을 종합하여 모형을 제시하였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모형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 운영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통적 방식의 학교 경영이 중앙집권적 운영인데 비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단위학교 경영으로 운영된다. 전통적인 학교운영에서는 상부기관의 시책 중심의 지시와 통제가 학교운영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책임경영제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는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둘째,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의 의사결정은 상부관청, 교장, 교사로 이어지는 명령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책임경영제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이나 인사 및 교원이 참여하여 토의 합의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경영의 의사결정은 직선적 조직계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책임경영제에서는 관련 인사들의 광범한 참여 속에 경영자의 지도성과 자율

러 구성원의 집단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의 교육과정은 획일적이고 학교가 선택권을 갖는다.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의 교육과정이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나름의 특성과 학생들의 개별학습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책임경영제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며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한다.

넷째,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교육 구조는 과도한 학급당 학생수 학생전용 교실제 강의 중심의 일제학습 학급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책임경영제에서는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화 교사 전용 교실제 운영 자료 중심의 개별학습 및 학습 집단의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다섯째,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재정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배분으로 관리중심의 기본 운영비를 위주로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데 비하여 책임경영제에서는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한다.¹⁰⁾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경영은 확고한 교육철학에 근거한 자율적인 경영이 아니라 중앙의 통제를 받는 타율적이고 형식적인 경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자율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율성에 기초한 책임성 있는 민주적 학교경영을 그 특징으로 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교육풍토에 뿌리내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정태범,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서울: 양서원, 1998), p.204..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모형



< 그림 II - 1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모형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학교교육은 가정과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학생의 교육지도는 물론 학교발전 및 학교, 지역사회의 유대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교육의 책무성 논의에서 강조되는 점은 학교교육은 학부모의 공납금과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학생, 학부모, 국민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권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개 교육의 주체가 누구이며 교육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 교육권에 관한 근거로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그리고 원리적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육권의 주체는 국민이며 국가의 공교육제도는 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부모(또는 주민)는 아동과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친권자로서 교육권을 갖는다. 따라서 주민은 교육의 외적조건 정비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셋째, 교육자치는 아동, 학생에 대한 교육권, 즉 교육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¹¹⁾ 즉, 교육권의 의미는 제도적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와도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권과 관련된 주민통제의 원리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한다는 것을

11) 박태우, 「한국교육법 원리의 법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함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주민통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만 지방 분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주민이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교육행정가의 관료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학교가 학생과 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견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국 주민 참여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익과 교육권이 대변 될 수 있도록 동의의 형성을 이루어 내는 데 초점이 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란 주민개인이나 교육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이 포함되어 대표가 다양하면 할수록 정당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사회의 보다 많은 제안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학교는 민주사회에서 공적인 성격을 띤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주민과의 유대나 협동은 학교경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본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지역사회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지역 주민의 접근은 학교경영의 필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다. 학교와 지역주민의 접근은 학교의 필요만을 일방적으로 알리던 공지의 관계에서 학교가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해석의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의 이해 및 상호수용의 문제들을 학교에서의 공공 관계로 발전시켰다. 이제는 민주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 및 그 신뢰에 대한 문제들을 지역주민의 학교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켜 양자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민의 지원과 참여를 불러들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져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각각 하위체제로서 서로 깊은 관련이 있

다.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체제구조의 측면에서 주민참여 증대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 강조된다. 즉 주민 참여가 학교체제에 못지 않게 교육에 기여하는 기능이 독자적, 상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하위체제가 서로 역할 내용을 조장하고 조화시키도록 교육체제를 개선 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야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각 기관간에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절차를 결정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를 시사한다. 최근에 와서 급격히 학부모의 교육권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의 일차 소유권자, 곧 교육에 대한 권리 행사자는 친권 즉 학부모의 자연권적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학부모도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소유권적 교육권은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국가가 독점하여 오다가 최근에 와서 민주화 물결에 힘입어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권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주민통제의 원리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한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평범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결에 과정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적 교육행정 즉 교육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 결정권의 행사는 민주교육에 의해서만 기대되는 것이므로 교육은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민주적 방법과 과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지도, 조언하는 교육행정도 역시 민주화되어야 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참여는 주민통제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다. 교육행정의 민주화는 교육의사 결정에의 주민 참여를 그 본질로 함으로 교육행정에 주민이 의사를 반영함은 자연스럽고 당위적인 행위라 하겠다. 학교 현장에 주민 통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주민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만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학부모가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과정에서 교육행정가의 관료적인 억압으로 벗어나 학교가 학생과 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견제를 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육에 대한 권리의 주장뿐만 아니라 참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의 참여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학습하는 내용과 생활지도 성적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되고 학교가 당면한 문제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어떤 결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학부모의 아이디어와 전문적 지식을 제공받게 된다.

셋째,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유발과 학습의 구체화 다양화에 기여하게 된다.¹²⁾ 이와 같이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의 참여 활동은 교사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넓혀주고 특수한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가까이 에서 접할 수 있게 되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는 학부모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명예교사제, 상담자원 봉사제, 자모 봉사제,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 교실, 아버지회 등의 활성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동

12) 주삼환, 장학 교장론 특강(서울:성원사,1989), p.23.

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여하히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적 역할을 분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교육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라 하겠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1997년부터 전국의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전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종래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했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 5438호, '97.12.1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5664호, '98.2.24)의 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폭이 확대되었다.¹³⁾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설치 배경과 성격 기능과 역할, 문제점을 고찰해 본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

세계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의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육 개혁에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가 그것이다. 그 중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는 우리 나

13)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Ⅱ(서울:사회교육문화사, 2000), p.12.

라 초·중등 교육개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제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¹⁴⁾ 이것은 그간 정보차원의 교육개혁의 학교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경영방식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로 교육과 관련된 집단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당해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경영에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모든 의사 결정이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공교육 체제하에서 교육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서 국민은 취학의 의무와 수업료 부담의무만 강요받았을 뿐 교육사무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된 것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신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

14) 교육부, 전게서. p.13.

기구”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¹⁵⁾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의 고른 참여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수는 7인 내지 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계 학교는 학부모위원 40-50%, 교육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실업계 학교는 학부모위원 30-40%, 교육위원 20-30%, 그리고 지역위원 30-50%의 구성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실업계 학교의 지역위원 중에 50% 이상은 기업 경영자이어야 한다.

학부모의 선출방법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여기서 민주적 대의 절차는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으나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선출절차가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학교의 사정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타당한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선출 할 수 있다.

교원위원의 선출은 당연직인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 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하여 학교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되고 나면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구성을 완료하게 된

15) 교육부, 상계서, p.9.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¹⁶⁾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과 각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육법 4장 2절 제 32조(기능)에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7)

16) 교육부, 상계서, pp.31-35.

17) 교육법전 편찬회, 교육법전(서울:교학사, 2001), p.16.

이상의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령과 각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심으로 그 기능을 분석하면 크게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둘째, 학교예산·결산의 심의, 셋째,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의 심의, 넷째,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섯째, 방과후·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의 심의, 여섯째, 초빙교원 심의, 일곱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여덟째,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심의, 아홉째,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신의를 들 수 있다.

5)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한 나라의 운영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은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학교의 학교규칙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 아니며 또 오랫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규칙에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규칙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들의 몫이다.

(2) 학교 예산·결산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의 예산·결산 관련 업무를 학교장과 행정 담당자가 처리하고 일반 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학교 재정은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없는 비밀의 (花園)처럼 운영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 재정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예산·결산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예산·결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 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해야 할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의 심의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역 수준의 지침을 근거로 학교 설립·운영의 목적/목표를 구현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기에 각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에게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교사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교과서 선정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 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에 맡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겠다.

(5) 방과후·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방과후 교육이 활성화되면 시설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던 교육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학교시설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들의 비판대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수업의 연장으로 운영되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성이 있다.

(6) 초빙교원 심의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항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장 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7)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재정의 부족분을 학부모로부터 각종 찬조금이나 기부금 등을 조성하여 충당하여 왔다.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 이에 대한 조성 뿐 아니라 사용 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찬조금, 기부금 등과 관련된 학교 부조리가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좀더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8) 학교급식에 관한 심의 사항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에 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급식의 형태와 비용, 업체 선정

등 학교급식의 제반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었다.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 발전과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할 수 있다.¹⁸⁾

은행출납제(School Banking) 등의 재정분야, 학생들의 학교청소 부담을 덜기 위한 청소용역 의뢰 등의 복지분야,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 등의 지역사회 분야,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 등 기타분야에도 심의할 수 있다. 학교를 좀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며 교육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등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1)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¹⁹⁾

(1) 설치 목적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학교자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학교 자치란 교육행정가의 통제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단위학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교의 내적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교의 외적 사회환경을 교육적으로 조성하는데

18) 교육부, 상계서, pp.47-88.

19) 이충원, 외국의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충북교육위원회 토론회자료, 2000), pp. 14-20.

앞장선다. 또 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권고하거나 제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하는 등의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습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의결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권고나 제안을 하는 결의 기구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들간에 공유된 교육방침을 통해 바람직한 학습 풍토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 결정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학교교육계획의 달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지역사회 및 교육청의 지원을 구한다.

셋째, 학교의 교육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관계법률, 규정 및 규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결정, 학습자료의 선정, 특별프로그램의 개설,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 교육 향상에 적합한 문제들에 관한 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방안과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2) 구성

위원회 구성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이며 정규교사 이외에 임시교사, 서무직원과 고용원도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학교 후원기업대표, 지역사회 대표 학생도 1명 참여하고 있다. Seattle시 교육구의 경우 위원정족수가 15명, Mukilteo시 교육구는 15명, Shoreline시 교육구는 12-16명이다.

(3) 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의 채용, 교사, 임시교사, 서무직원, 고용원의 채용, 학교예산, 학교 목표 설정과 학생 생활지도 등이다. 이것 이외에도 교직원의 인사 평가도 담당한다.

2)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²⁰⁾

(1) 설치 목적

단위 학교의 교육관리에 있어 그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 따라서 영국의 단위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청과 교육과학성이 정한 기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협의하거나 스스로 정한 독자적인 재량권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재량권 내에서 학교운영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학교관리의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 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1986년 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교장, 교사위원, 교육청 임명 위원, 선출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9-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6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가진 학교의 경우 총 위원 수는 19명이며 학부모 위원이 5명, 교장1명, 교사 위원이 2명, 교육청임명위원 5명, 선출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의를 주선하고 의사 진행, 자문을 해주는 서기가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교육과정에 대해 교장, 교사, 위원,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책임을 지

20) 이충원, 상계서, pp.29-35.

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되고 그 운영이 잘 되도록 교장을 도와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은 국가 교육과정과 종교 교육이고, 중학교의 성교육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의 심의, 예산관리와 재정운영, 교직원 임명 관리 해임 (교장임명, 교감임명, 교사 임명), 정보의 제공 (학교안내 책자발간, 연례보고서 발간), 장학감사, 학교규칙의 제정, 학생들의 징계 결정, 학사일정의 결정 등이다.

3) 독일의 학교협의회²¹⁾

(1) 학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학교협의회는 최소 14명의 교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학교협의회의 의장은 단위학교의 교장이 당연직이며, 부의장은 학부모 대표가 된다. 학교협의회는 교사 대표 6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3명,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가 없는 경우 학생대표 없이 학부모대표 5명만이 학부모회가 없으면 일반 학부모대표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심지어는 주 학교위원회에도 학생 8명이 참여하게 되는 등 교육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교협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여야 할 안전 등은 비밀을 유지해 줄 의무를 갖는다. 만일 교사가 비밀을 유지해야 할 안전에 대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타 학부모의 경우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동의로 정직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학교협의회는 한 학기당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는 적어도 3분의 1의 제안으로 소집된다.

21) 이충원, 상계서, pp.45-48.

(2) 학교협의회 기능

학교협의회는 학교경영,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개 그룹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학교 협의회 교사 협의회와 학교장에게 기본적인 교육문제 특히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 진급 등에 관한 제안권을 가지며, 특히 다음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를 하게 된다.

- 학교 기숙사 규칙의 제정
- 학급사항과 숙제에 관한 결정
- 학교의 규정과 행정 규정의 일관성 있는 실행 결정
-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정학, 제적 등)
- 학교 시설 설비의 확보와 설치
- 시설 및 그 사용 청구
- 학교 이름의 부여
- 학생 진급에 관한 문제
- 소풍, 도보여행, 수련회, 산업시찰, 박물관 견학, 등과 같은 학교 행사
- 동호인 활동(서클모임)등

4) 시사점

첫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이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운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학교단위 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둘째, 학부모 조직, 학교운영위원회가 재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서로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교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학교운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구성원의 자치성에 입각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개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조직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기구로서는 학교 어머니 회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 어머니회는 재정적 지원이 주된 기능이었으나 학교 어머니회가 교육공동체의 비중 있는 구성원으로서 학교운영에 있어 공동의 의사 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재정적, 지원측 면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있어서 능동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5. 선행연구의 고찰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그 해 9월부터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 설치되기 시작하여 이제 8년의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1997년부터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의 대부분 학교에서의 연구는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또 운영의 초기에 대한 연구로 그 발전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인 규정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물 중에서 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물들을 제외하고 발전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들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자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 분석”에서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에 따른 교육부의 운영지침과 의견들에 대해서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교사·학부모의 견해를 조사·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실시에 대하여 서울시내 학·부모는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는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에 대해 교사·학부모 모두 11-15명이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부 운영지침에 규정된 교원위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교사는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는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에 대하여는 교사의 경우 자문기구, 학부모의 경우 심의 및 자문기구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종족 수에 대하여는 교사·학부모 모두 2/3이상의 찬성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어서 신중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²²⁾

배종희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경남 창원시의 교사·학부모,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동안의 운영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으로 교사는 심의기구를 학부모는 의결·심의·자문기구를 선호하였으며 교원위원의 비율에 대하여는 교사는 50% 정도를 높이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학부모와 지역인사는 현행

22) 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규정을 선호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대하여는 교사와 지역인사는 편성에는 참여하되 운영은 학교에 일임하는 안을 선호하였으나 학부모는 필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에 대하여는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는 학년도와의 일치에 학부모는 3월말까지의 현행 규정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의결정족수는 더 높일 것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학부모와의 지역인사는 현행 규정에 높게 반응하였다.²³⁾

이상과 같이 그간의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반 규정을 어떻게 제정하면 좋겠는지를 알아보거나 제정된 규정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 많았다. 또 학부모의 학교경영 욕구만을 밝힌 것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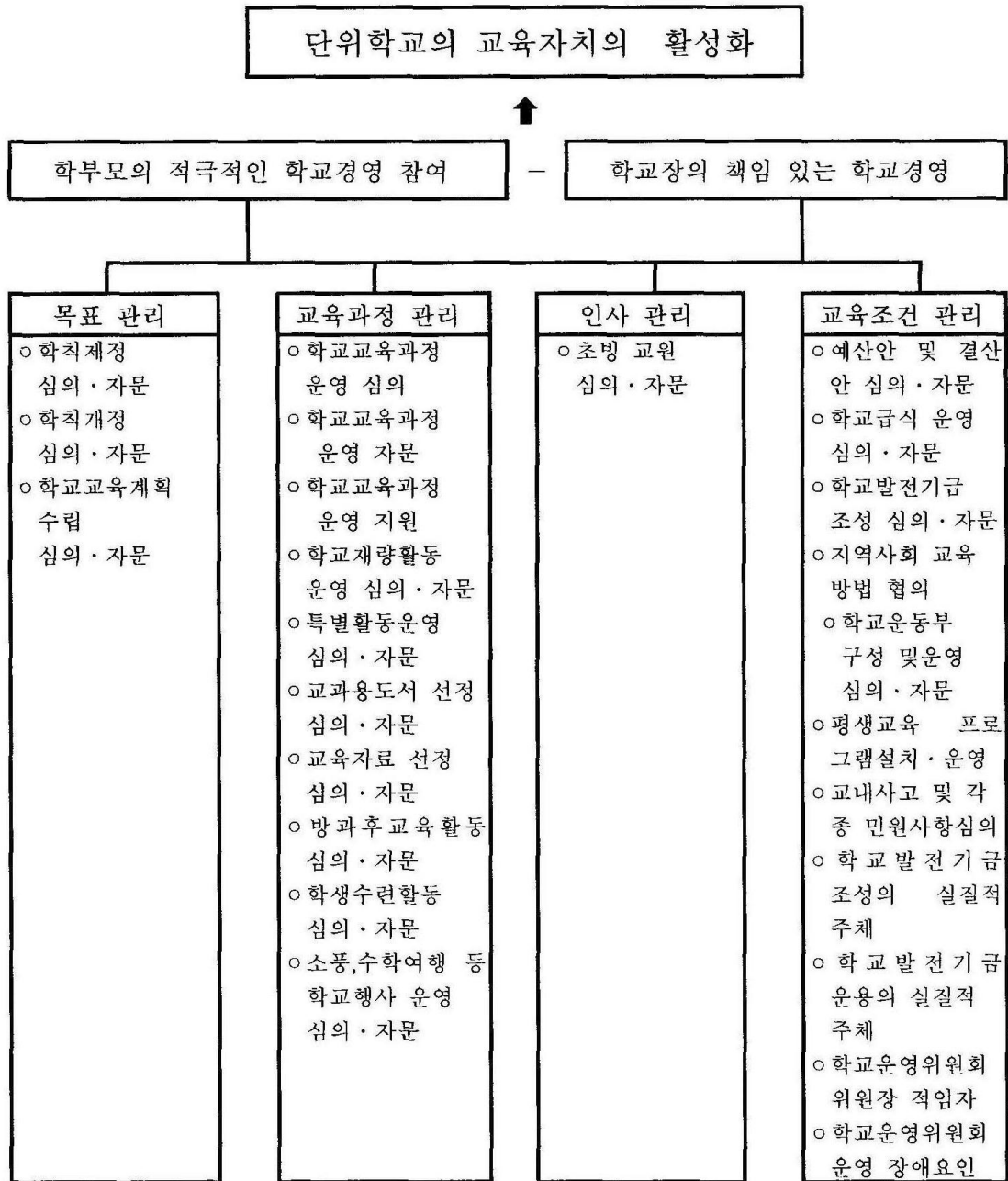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조기에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제까지 학교단위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 요구와 학부모의 이 요구를 학교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23) 배종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Ⅲ.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1.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 그림 Ⅲ - 1 > 분석 모형 설정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경영에 관하여 식견과 합리성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학교장이 이 요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만일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는 높으나, 학교장의 인식 정도와 수용태도가 부정적이라면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경영과 교육자치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학교장의 인식 수준이 매우 긍정적이고 수용태도가 바람직하더라도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경영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부모는 학교경영에서 '공동 의사 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실패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현재 조직·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와 학부모의 경영 참여 요구를 학교장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를 조사·분석해 보는 것은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업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 동료의 결정에 따라하기를 바라는 것, 행정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과업의 성격에 따라 학부모의 참여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지나친 참여나 간섭은 소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교육자치와 단위 학교 책임경영,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관련 이론과 외국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동향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항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포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 59명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59명으로 선정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에 대한 설문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로서는 국내의 선행연구 논문 보고서와 각종 도서를 참고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 5438호, 97. 12. 13) 및 동 시행령(대통령 제 15664호, 98. 2. 24)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나타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즉 심의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하였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요구를 알아보는 설문지와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수용태도를 알아보는 설문지를 <표 III-1 >과 같이 구성하였다.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 요구 및 학교장의 인식과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목표관리, 교육과정 관리, 인사관리, 교육조건관리 등의 하위변인에 따라 전체 25문항을 작성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59개교의 초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59명을 각

각 선정하였으며, 자료분배 및 수집기간은 2004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교감선생님을 통하여 우편물로 송부하였으며, 응답해 준 설문지를 받아 본 결과, 59개 학교 중 50개교(회수율 84.7%)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토대로 성별, 연령, 경력에 따라 문항별로 집단간 교차분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경우에는 설문지에 응답해 준 학교장 가운데, 여성이 1명 밖에 없었으므로 집단내 성별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분석하지 않았다. 또,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를 알아보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정한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교경영에 참여를 직접적으로, 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을 59세 이상, 59세 미만으로 기준을 정한 근거는 학교장 정년이 62세로 봤을 때, 59세부터 62세까지 4년간 중임기간으로 보고, 59세미만은 학교장 초임기간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력에서는 5년 미만, 5년이상으로 정한 것은 1차년도 4년, 중임기간 4년으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 연령별로 40세를 기준으로 하여 40세미만, 40세이상으로 정한 것은 사전에 포항교육청 관내 학교운영위원회원의 연령 분포를 조사해 본 결과 40세를 전후로 해서 양쪽 비슷한 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연령을 40세미만과 40세 이상으로 조사 기준을 정했으며, 학교운영위원 경력을 2년미만, 2년이상으로 정한 것은 학교운영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경력기준을 위와 같이 정하게 되었다.

< 표Ⅲ-1 >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요구 및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설문지 구성

구 분	하위 변인	내 용	학부모 작성용	학교장 작성용	문항 수	비 고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요구와 학교장의 인식 조사·분석	목표 관리	○학칙의 제정 및개정	1	1	1	초· 중등 교육 법 제32 조 학교 운영 위원 회 기능
	교육 과정 관리	○학교교육계획수립	3	3	1	
		○학교교육과정운영 방법	4,5,6,	4,5,6	3	
	인사 관리	○학교재량활동 운영	7	7	1	
		○특별활동 운영	8	8	1	
		○교과용도서 및 교 육자료 선정	9,10	9,10	2	
		○방과후 교육활동	11	11	1	
		○소풍,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12	12	1	
		○방학중 교육활동	13	13	1	
		○ 학생수련활동	14	14	1	
		○초빙교원심의	15	15	1	
		○학교급식활동	16	16	1	
		○지역사회교육 방법	17	17	1	
	교육 조건 관리	○예산안 및 결산	2	2	1	
		○학교운동부의구성· 운영	18	18	1	
		○평생교육의 프로 그램 설치·운영	19	19	1	
		○교내사고 및 각종 민원사항	20	20	1	
		○학교경영에 대한 모든 사항	21	21	1	
		○학교발전기금조성의 실질적 주체	22	22	1	
		○학교발전기금운용의 실질적 주체	23	23	1	
		○학교운영위원장의 적임자	24	24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	25	25	1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와 학교장의 인식 및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과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 = .05$, $\alpha = .01$, $\alpha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Likert Type의 4단계 척도를 적용하여 각 문항의 반응은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해야 한다 (4점),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한다.(3점),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2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1점) 으로 하였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 표 IV-1 > 과 같다.

< 표 IV-1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학교장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성별	남	49	98
	여	1	2
연령	59세미만	34	68
	59세이상	16	32
경력	5년미만	26	52
	5년이상	24	48

(2) 학부모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성별	남	20	40
	여	30	60
연령	40세미만	26	52
	40세이상	24	48
경력	2년미만	36	72
	2년이상	14	28

< 표 IV-1 > 은 설문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학교장의 경우, 총 50명 중에서 남자가 98% (49명), 여자가 2%(1명)이며, 59세 미만이 68%(34명), 59세 이상이 32%(16명), 경력별로는 5년미만이 52%(26명), 5년이상인 48%(24명)을 차지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총 50명중에서 남자가 40%(20명),여자가 60%(30명)이며, 40세 미만이 52%(26명), 40세이상인 48%(24명), 경력별로는 2년미

만이 72%(36명), 2년이상인 28%(14명)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장의 경우, 설문지에 응답한 여자교장이 1명으로 성별로 분석하여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2. 분석결과

1)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장의 인식

(1)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2 > 학칙 제정·개정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령	59세미만	34	2.88	0.77	-0.682	0.499
	59세이상	16	3.06	1.06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73	0.83	-1.818	0.075
	5년이상	24	3.17	0.87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	20	2.80	0.77	0.495	0.623
	여	30	2.67	1.03		
연령	40세미만	26	2.65	0.94	-0.521	0.604
	40세이상	24	2.79	0.93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69	0.92	-0.310	0.758
	2년이상	14	2.79	0.97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94	0.87	1.226	0.223
학 부 모	50	2.72	0.93		

* $p < .05$, ** $p < .01$, *** $p < .001$

학칙 제정·개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 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집단내 연령별, 학교장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장과 학부모 교차분석에서도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두 집단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 평균값이 2.94, 학부모의 평균값이 2.72 로써 양 집단 상당수가 학칙제정·개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 예산·결산 안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3 > 학교 예산 결산안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97	1.00	-0.324	0.747
	59세이상	16	3.06	0.77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92	1.02	-0.608	0.499
	5년이상	24	3.08	0.83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3.15	0.67	2.756	0.008**
	여	30	2.50	0.90		
연 령	40세미만	26	2.65	0.94	-0.896	0.375
	40세이상	24	2.88	0.80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72	0.88	-0.488	0.628
	2년이상	14	2.86	0.86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3.00	0.93	1.336	0.185
학 부 모	50	2.76	0.87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 예산·결산안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집단내 연령별, 학교장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남·여 학부모간 유의확률이 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2.756, p<0.01) 따라서 성별로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남성인 학부모위원(평균값=3.15)은 학교 예산·결산 안에 학부모의 참여에 대하여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 여성 학부모위원(평균값=2.50)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장과 학부모 두 집단간 교차분석에서도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부모의 평균값(학교장=3.00, 학부모=2.76)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두 집단 모두 학부모가 예산·결산안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4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82	0.83	2.119	0.039*
	59세이상	16	2.31	0.70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69	0.84	0.286	0.776
	5년이상	24	2.63	0.82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40	0.88	0.374	0.710
	여	30	2.30	0.95		
연 령	40세미만	26	2.42	0.86	0.663	0.511
	40세이상	24	2.25	0.99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36	0.87	0.258	0.797
	2년이상	14	2.29	1.07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66	0.82	1.836	0.069
학 부 모	50	2.34	0.92		

* $p < .05$, ** $p < .01$, *** $p < .001$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 집단내 학교장 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확률이 0.03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2.119$, $p<0.05$) 즉, 59세 미만인 학교장의 경우(평균값=2.82), 학교교육 수립에 학부모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59세 이상의 비교적 높은 연령의 학교장들(평균값=2.31)은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데 상당수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두 집단의 평균값(학교장 평균값=2.66, 학부모 평균값=2.34)을 비교해 볼 때에, 모두 두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는 데에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심의에 대한 참여 인식

<표 IV-5>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심의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령	59세미만	34	2.65	0.92	1.137	0.261
	59세이상	16	2.31	1.08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50	0.91	-3.00	0.766
	5년이상	24	2.58	1.06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30	0.98	0.123	0.902
	여	30	2.27	0.91		
연 령	40세미만	26	2.38	0.75	0.828	0.412
	40세이상	24	2.17	1.09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28	0.91	-0.027	0.979
	2년이상	14	2.29	0.99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54	0.97	1.368	0.174
학 부 모	50	2.28	0.93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은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학부모위원의 전체 평균값이 2.28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며, 학교장 역시 평균값 2.54로 학교교육과정 운영면에는 상당수가 제한적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5) 학교교육과정 운영 자문에 대한 참여 인식

<표 IV-6>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령	59세미만	34	2.68	0.81	1.161	0.251
	59세이상	16	2.38	0.96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58	0.70	-0.026	0.979
	5년이상	24	2.58	1.02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20	0.77	-0.392	0.697
	여	30	2.30	0.95		
연 령	40세미만	26	2.35	0.85	0.720	0.475
	40세이상	24	2.17	0.92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36	0.87	1.318	0.194
	2년이상	14	2.00	0.88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58	0.86	1.844	0.068
학 부 모	50	2.26	0.88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자문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학교장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 전체 평균값이 2.26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자문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상당수가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교장 역시 평균값이 2.58로써 상당수가 제한적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6)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7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82	0.045	0.964
	59세이상	16	2.81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77	-0.463	0.645
	5년이상	24	2.88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45	0.69	0.606	0.547
	여	30	2.30	0.95		
연 령	40세미만	26	2.42	0.90	0.541	0.591
	40세이상	24	2.29	0.81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39	0.84	0.381	0.705
	2년이상	14	2.29	0.91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82	0.80	2.784	0.006**
학 부 모	50	2.36	0.85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 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 교차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06으로 두 집단간의 매우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t=2.784$, $p<0.01$) 따라서 두 집단간 전체적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장(평균값=2.82)은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을 해야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에, 학부모위원(평균값=2.36)은 제한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 학교 재량활동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8 > 학교 재량활동 운영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65	0.81	0.825	0.413
	59세이상	16	2.44	0.89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54	0.81	-0.363	0.718
	5년이상	24	2.63	0.88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15	0.81	0.812	0.856
	여	30	2.10	1.03		
연 령	40세미만	26	2.08	0.89	-0.334	0.740
	40세이상	24	2.17	1.01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22	0.96	1.240	0.221
	2년이상	14	1.86	0.86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58	0.84	2.587	0.011*
학 부 모	50	2.12	0.94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재량활동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 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학교장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

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확률이 0.011로 두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587, p<0.05) 따라서, 두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장(평균값=2.58)과 학부모위원(평균값=2.12)은 학교재량활동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 또는 부정적 입장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참여인식

< 표 IV-9 > 특별활동 운영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50	0.86	0.474	0.637
	59세이상	16	2.38	0.89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42	0.90	-0.312	0.756
	5년이상	24	2.50	0.83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15	0.88	0.069	0.946
	여	30	2.13	0.82		
연 령	40세미만	26	2.15	0.78	0.121	0.904
	40세이상	24	2.13	0.90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28	0.85	1.926	0.060
	2년이상	14	1.79	0.70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46	0.86	1.887	0.062
학 부 모	50	2.14	0.83		

* p < .05 , ** p < .01 , *** p < .001

특별활동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에 평균값이 2.14, 표준편차가 0.83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활동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학교장, 학부모, 두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장(평균값=2.46)과 학부모위원(평균값=2.14)에서 학교장이나 학부모위원 모두 특별활동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9)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0 > 교과용 도서선정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44	1.05	1.607	0.115
	59세이상	16	1.94	1.00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42	0.99	1.002	0.321
	5년이상	24	2.13	1.12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30	0.98	0.974	0.335
	여	30	2.03	0.93		
연 령	40세미만	26	2.19	0.94	0.403	0.689
	40세이상	24	2.08	0.97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22	0.93	0.983	0.330
	2년이상	14	1.93	1.00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학교장	50	2.28	1.05	0.700	0.486
학부모	50	2.14	0.95		

* $p < .05$, ** $p < .01$, *** $p < .001$

교과용 도서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는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장은 평균값이 2.28이고, 학부모는 평균값이 2.14이다. 따라서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교과용 도서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장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0)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1 > 교육자료 선정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연령	59세미만	34	2.21	1.458	0.151
	59세이상	16	1.81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23	1.240	0.221
	5년이상	24	1.92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1.95	0.94	-0.179	0.859
	여	30	2.00	0.98		
연 령	40세미만	26	2.15	1.08	1.346	0.184
	40세이상	24	1.79	0.78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03	0.94	0.561	0.577
	2년이상	14	1.86	1.03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08	0.90	0.538	0.592
학 부 모	50	1.98	0.96		

* $p < .05$, ** $p < .01$, *** $p < .001$

교육자료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에 학교장(평균값= 2.08)과 학부모(평균값=1.98), 두 집단 모두 교육자료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용 도서 선정에서처럼 제한적 입장이거나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11)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2 > 방과 후 교육활동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88	0.77	1.087	0.283
	59세이상	16	2.63	0.81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85	0.78	0.430	0.669
	5년이상	24	2.75	0.79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25	0.72	0.354	0.725
	여	30	2.17	0.87		
연 령	40세미만	26	2.19	0.90	-0.069	0.945
	40세이상	24	2.21	0.72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22	0.83	0.309	0.759
	2년이상	14	2.14	0.77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80	0.78	3.772	0.000***
학 부 모	50	2.20	0.81		

* $p < .05$, ** $p < .01$, *** $p < .001$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72$, p

<0.001) 즉,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학교장, 학부모,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장 (평균값=2.80)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부모(평균값=2.20)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3 >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85	0.89	0.976	0.334
	59세이상	16	2.56	1.15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85	0.92	0.643	0.523
	5년이상	24	2.67	1.05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35	0.99	0.307	0.760
	여	30	2.27	0.91		
연 령	40세미만	26	2.35	0.98	0.361	0.719
	40세이상	24	2.25	0.90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42	0.87	1.436	0.158
	2년이상	14	2.00	1.04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76	0.98	2.405	0.018*
학 부 모	50	2.30	0.93		

* p < .05 , ** p < .01 , *** p < .001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 분석에서는 유의확률이 0.018로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t=2.405, p<0.05$) 즉,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값을 비교해 보더라도 학교장은 평균값이 2.76이고, 학부모의 평균값은 2.30으로써 학교장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참여하는 데 대하여 상당수가 제한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방학중 교육활동에 참여 인식

< 표 IV-14 > 방학 중 교육활동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연령	59세미만	34	2.94	0.81	1.178	0.245
	59세이상	16	2.63	1.02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85	0.92	0.050	0.960
	5년이상	24	2.83	0.87		

② 학부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	20	2.25	0.97	0.180	0.858
	여	30	2.20	0.96		
연령	40세미만	26	2.27	1.00	0.377	0.708
	40세이상	24	2.17	0.92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22	1.02	0.026	0.979
	2년이상	14	2.21	0.80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학교장	50	2.84	0.89	3.362	0.001***
학부모	50	2.22	0.95		

* $p < .05$, ** $p < .01$, *** $p < .001$

방학 중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62$, $p<0.01$) 즉,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교장과 학부모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 해 본 결과, 학교장은 평균값이 2.84이고, 학부모는 평균값이 2.22 로써 학교장은 방학중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14) 학생 수련활동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5 > 학생 수련활동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연령	59세미만	34	2.85	0.89	0.145	0.885
	59세이상	16	2.81	0.98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81	0.94	-0.258	0.797
	5년이상	24	2.88	0.90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35	0.99	0.413	0.681
	여	30	2.23	0.97		
연 령	40세미만	26	2.35	0.98	0.498	0.621
	40세이상	24	2.21	0.98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39	0.93	1.282	0.206
	2년이상	14	2.00	1.04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84	0.91	2.975	0.004**
학 부 모	50	2.28	0.97		

* $p < .05$, ** $p < .01$, *** $p < .001$

학생 수련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확률이 0.004로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75$, $p < 0.01$) 즉, 학생 수련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장은 평균값이 2.84이고 학부모는 평균값이 2.28로써 학교장은 학생 수련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이거나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5) 초빙 교원 임용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6 > 초빙 교원임용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59	1.16	-0.832	0.409
	59세이상	16	2.88	1.09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58	1.12	-0.666	0.509
	5년이상	24	2.79	1.06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75	0.79	3.114	0.003**
	여	30	1.93	0.98		
연 령	40세미만	26	2.12	0.99	-1.082	0.285
	40세이상	24	2.42	0.97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22	0.99	-0.431	0.668
	2년이상	14	2.36	1.01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68	1.13	1.978	0.051
학 부 모	50	2.26	0.99		

* $p < .05$, ** $p < .01$, *** $p < .001$

초빙교원 임용시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학교장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연령별, 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유의확률이 0.00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14$, $p<0.01$) 또,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결과

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학교장은 평균값이 2.68이고, 학부모는 평균값이 2.26으로 초빙교원 임용 시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장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에, 학부모는 제한적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6) 학교 급식 활동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7 > 학교 급식 활동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3.29	0.76	0.079	0.938
	59세이상	16	3.31	0.79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3.23	0.82	-0.664	0.510
	5년이상	24	3.38	0.71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3.05	0.60	-0.582	0.563
	여	30	3.17	0.75		
연 령	40세미만	26	3.08	0.74	-0.456	0.650
	40세이상	24	3.17	0.64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3.08	0.73	-0.599	0.552
	2년이상	14	3.21	0.58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3.30	0.76	1.238	0.219
학 부 모	50	3.12	0.69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 급식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평균이 3.30, 3.12, 표준편차가 0.76, 0.69로써 학교 급식활동에 가능하면 또는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지역사회 교육방법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8 > 지역사회 교육방법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71	0.87	-1.623	0.111
	59세이상	16	3.31	0.81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77	0.91	-0.598	0.558
	5년이상	24	2.92	0.83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90	0.85	3.349	0.002**
	여	30	2.07	0.87		
연 령	40세미만	26	2.15	0.92	-1.967	0.055
	40세이상	24	2.67	0.92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47	0.94	0.862	0.393
	2년이상	14	2.21	0.97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학교장	50	2.84	0.87	2.424	0.017*
학부모	50	2.40	0.95		

* $p < .05$, ** $p < .01$, *** $p < .001$

지역사회 교육방법과 관련한 것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학교장 경력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별간에는 유의확률이 0.002로 유의미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3.349$, $p < 0.01$) 연령별, 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에 남성 학부모위원과 여성 학부모위원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남성 학부모위원의 평균값이 2.90이고, 표준편차 0.85로써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에, 여성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2.07이고, 표준편차가 0.87로써 참여에 제한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확률이 0.017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24$, $p < 0.05$) 즉, 두 집단간에는 지역사회 교육방법과 관련한 것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장과 학부모 집단의 전체적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장(평균값=2.84)은 지역사회 교육방법과 관련한 것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학부모(평균값=2.40)는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를 상당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18)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19 > 학교 운동부 구성, 운영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94	0.89	-0.434	0.666
	59세이상	16	3.06	1.00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96	0.92	-0.147	0.884
	5년이상	24	3.00	0.93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90	0.85	1.278	0.207
	여	30	2.57	0.94		
연 령	40세미만	26	2.50	0.99	-1.647	0.106
	40세이상	24	2.92	0.78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58	0.87	-1.472	0.147
	2년이상	14	3.00	0.96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98	0.91	1.535	0.128
학 부 모	50	2.70	0.91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학교장(평균값=2.98), 학부모(평균값=2.70), 모두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20 > 평생 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3.15	0.78	0.346	0.731
	59세이상	16	3.06	0.85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3.04	0.77	-0.748	0.458
	5년이상	24	3.21	0.83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3.00	0.65	1.635	0.109
	여	30	2.63	0.85		
연 령	40세미만	26	2.50	0.81	-2.782	0.008**
	40세이상	24	3.08	0.65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86	0.76	1.169	0.248
	2년이상	14	2.57	0.85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3.12	0.80	2.140	0.035*
학 부 모	50	2.78	0.79		

* p < .05 , ** p < .01 , *** p < .001

평생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학교장 경력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연령별로는 유의확률이 0.008로서 유의미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82, p<0.01$) 그러나 성별, 운영위원 경력별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40세 이상 학부모의 경우는 평균이 3.08, 표준편차가 0.65로 평생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해 가능하면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수가 많은 반면에, 40세미만의 학부모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2.50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상당수가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의확률이 0.03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40, p<0.05$) 집단간에는 평생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하여 학부모가 참여해서 심의·자문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학교장(평균값=3.12)은 상당수가 ‘가능하면 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학부모(평균값=2.78)는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에 상당수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20) 교내사고, 학교 민원사항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21 > 교내사고, 학교 민원사항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94	0.65	0.325	0.746
	59세이상	16	2.88	0.72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88	0.59	-0.388	0.700
	5년이상	24	2.96	0.75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3.00	0.65	1.852	0.070
	여	30	2.67	0.61		
연 령	40세미만	26	2.77	0.65	-0.351	0.727
	40세이상	24	2.83	0.64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67	0.63	0.063	0.016*
	2년이상	14	3.14	0.53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92	0.67	0.920	0.360
학 부 모	50	2.80	0.64		

* $p < .05$, ** $p < .01$, *** $p < .001$

교내사고, 학교 민원사항에 관해 학부모가 참여해서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학교장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운영위원 경력별로는 유의확률이 0.016으로 유의미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0.063, p<0.05$) 즉, 운영위원 경력이 2년 이상인 학부모의 경우는 평균이 3.14, 표준편차가 0.53으로 교내사고, 학교 민원사항에 관해 학부모가 가능하면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데, 상당수가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운영위원 경력이 2년 미만인 학부모의 경우는 평균값이 2.67, 표준편차가 0.61로써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상당수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장-학부모, 교차 분석 결과에서도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부모 두 집단간의 전체적 평

균값을 비교해 볼 때에, 학교장(평균값=2.92), 학부모(평균값=2.80) 두 집단 모두 교내 사고나 학교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학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참여 인식

< 표 IV-22 > 학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 심의·자문

① 학교장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연 령	59세미만	34	2.24	0.89	-1.036	0.306
	59세이상	16	2.50	0.73		
학교장 경력	5년미만	26	2.35	0.85	0.226	0.822
	5년이상	24	2.29	0.86		

② 학부모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성 별	남	20	2.30	0.68	2.103	0.041*
	여	30	1.83	0.70		
연 령	40세미만	26	1.77	0.71	-2.435	0.019*
	40세이상	24	2.29	0.81		
운영위원 경력	2년미만	36	2.03	0.81	0.110	0.913
	2년이상	14	2.00	0.78		

③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t	p
학 교 장	50	2.32	0.84	1.830	0.070
학 부 모	50	2.02	0.80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유의확률이 0.041로 유의미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03, p<0.05$) 따라서 성별로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남성위원(평균값=2.30)보다 여성위원(평균값=1.83)은 학교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확률이 0.019로써 견해의 차이가 있었으며, ($t=-2.435, p<0.05$) 연령별로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에 40세 미만(평균값=1.77)이 40세 이상(평균값=2.29)보다 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장-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미한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각각 2.32, 2.02 표준편차가 0.84, 0.80으로 학교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두 집단 모두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2) 학교 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인식

< 표 IV-23 > 학교 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

① 학교장

구 분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와 학교장	학교장	예산·회계 담당자	χ^2 (d.f.)	p
연령	59세미만	12(35.3%)	20(58.8%)	2(2.9%)	.	3.388	0.184
	59세이상	9(56.3%)	5(31.3%)	2(12.5%)	.		
학교 장 경력	5년미만	7(26.9%)	17(65.4%)	2(7.7%)	.	5.502	0.640
	5년이상	14(58.3%)	8(33.3%)	2(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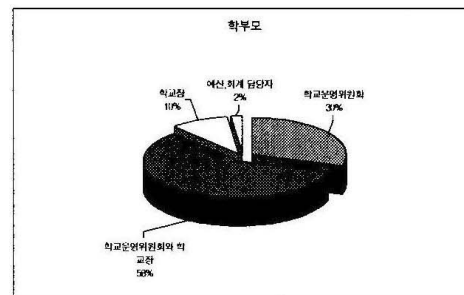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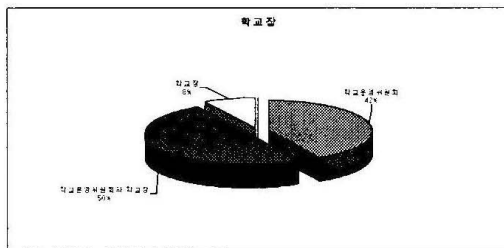
② 학부모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학교장	예산·회계담당자	χ^2 (d.f.)	p
성별	남	5(25%)	13(65%)	2(10%)	·	1.226	0.747
	여	10(33.3%)	16(53.3%)	5(10%)	1(2%)		
연령	40세 미만	9(34.6%)	13(50%)	3(11.5%)	1(3.8%)	2.034	0.565
	40세 이상	6(25%)	16(66.7%)	2(8.3%)	·		
운영위원 경력	2년 미만	11(30.6%)	21(58.3%)	4(11.1%)	·	2.746	0.432
	2년 이상	4(28.6%)	8(57.1%)	1(7.1%)	1(7.1%)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장

학부모



<그림 IV-1>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학교장, 학부모 인식 분포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 집단의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의 응답자 중 50%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라고 응답하였고, 42%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응답하

였다. 그 다음으로는 ‘ 학교장 ’ 에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학부모의 경우에는 58%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라고 응답하였고, 30%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교장’(10%), ‘예산·회계 담당자’(2%)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실질적인 주체로 학교장,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라고 응답해 주었다. 한편, 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각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 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23) 학교 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인식

< 표 IV-24 > 학교 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

① 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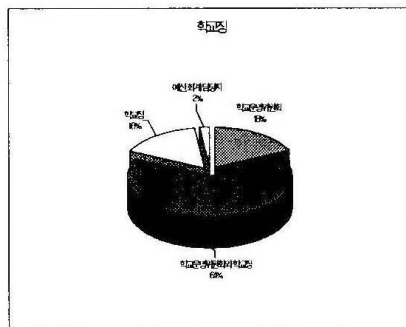
구 분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와 학교장	학교장	예산·회계 담당자	χ^2 (d.f.)	p
연령	59세 미만	6(17.6%)	20(58.8%)	7(20.6%)	1(2.9%)	2.321	0.509
	59세 이상	3(18.8%)	12(75%)	1(6.3%)	.		
학교 장 경력	5년 미만	3(11.5%)	15(57.7%)	7(26.9%)	1(3.8%)	6.555	0.087
	5년 이상	6(25%)	17(70.8%)	1(4.2%)	.		

②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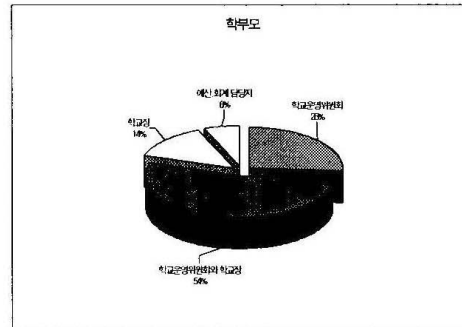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학교장	예산·회계담당자	χ^2 (d.f.)	p
성별	남	7(35%)	9(45%)	3(15%)	1 (5%)	1.618	0.656
	여	6(20%)	18(60%)	4(13.3%)	2 (6.7%)		
연령	40세 미만	7(26.9%)	15(57.7%)	3(11.5%)	1 (3.8%)	0.808	0.848
	40세 이상	6(25%)	12(50%)	7(14%)	3 (6%)		
운영위원경력	2년 미만	11(30.6%)	19(52.8%)	5(13.9%)	1 (2.8%)	3.288	0.349
	2년 이상	2(14.3%)	8(57.1%)	2(14.3%)	2 (14.3%)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장



학부모



<그림 IV-2>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학교장, 학부모 인식 분포도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해서 학교장, 학부모 집단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의 64%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응답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18%), 학교장(16%), 예산·회계 담당자(6%)이고, 학부모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5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26%), 학교장(14%), 예산·회계 담당자(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주체 또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각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 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24)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에 대한 인식

< 표 IV-25 >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

① 학교장

구 분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 위원	학교장	학교운영 위원회 교원위원	학교운영 위원회 지역위원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χ^2 (d.f.)	p
연령	59세 미만	11(32.4%)	7 (20.6%)	·	2(5.9%)	14(41.2%)	0.409	0.938
	59세 이상	4(25%)	3 (18.8%)	·	1(6.3%)	8(50%)		
학교 장 경력	5년 미만	9(34.6%)	5 (19.2%)	·	1(3.8%)	11(42.3%)	0.855	0.836
	5년 이상	6(25%)	5 (20.8%)	·	2(8.3%)	11(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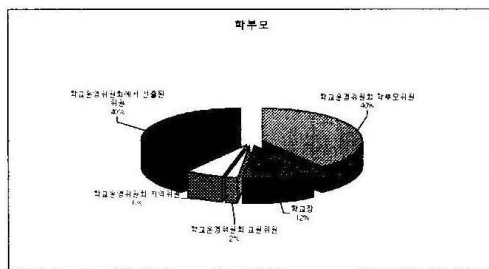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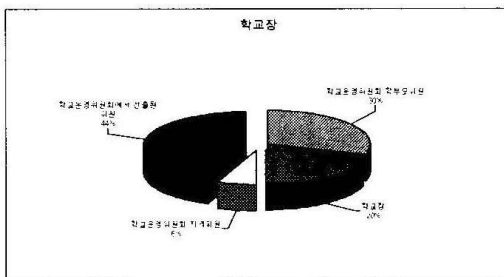
② 학부모

구분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 위원	학교장	학교운영 위원회 교원위원	학교운영 위원회 지역위원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χ^2 (d.f.)	p
성별	남	8(40%)	3(15%)	1(5%)	1(5%)	7(35%)	2.014	0.733
	여	12(40%)	3(10%)	·	2(6.7%)	13(43.3%)		
연령	40세 미만	14(53.8%)	1(3.8%)	·	1(3.8%)	10(38.5%)	7.131	0.129
	40세 이상	6(25%)	5(20.8%)	1(4.2%)	2(8.3%)	10(41.7%)		
운영 위원 경력	2년 미만	13(36.1%)	3(8.3%)	1(2.8%)	1(2.8%)	18(50%)	7.755	0.101
	2년 이상	7(50%)	3(21.4%)	·	2(14.3%)	2(14.3%)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장

학부모



<그림 IV-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에 대한 학교장, 학부모 인식 분포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장과 학부모 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의 44%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응답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30%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학교장'(20%),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위원 응답자 중에서 40%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40%), '학교장'(12%),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6%),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적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각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 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2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 표 IV-26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 요인

① 학교장

구분		비민주적 배타적형태	전문적식견 부족비판적 시각	참여 의 지 부족	교육청의 지원부족	기타	χ^2 (d.f.)	p
연령	59세 미만	1 (2.9%)	9 (26.5%)	19 (55.9%)	3 (8.8%)	2 (5.9%)	3.581	0.466
	59세 이상	.	8 (50%)	7 (43.8%)	1 (6.3%)	.		
학교 장 경력	5년 미만	.	5 (19.2%)	15 (57.7%)	4 (15.4%)	2 (7.7%)	10.434	0.034
	5년 이상	1 (4.2%)	12 (50%)	11 (45.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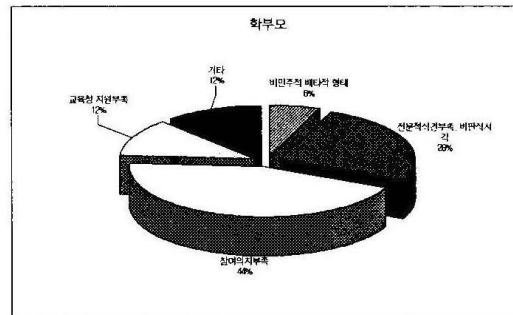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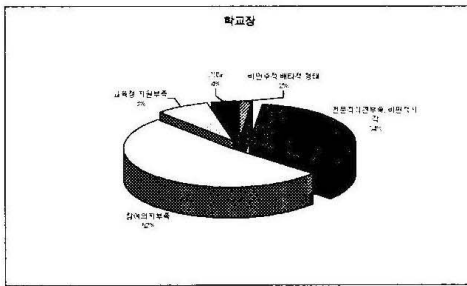
② 학부모

구분		비민주적 배타적 형태	전문적 식견부족 비판적 시각	참여의지 부족	교육청의 지원부족	기타	χ^2 (d.f.)	p
성별	남	·	4(20%)	12(60%)	3(15%)	1(5%)	6.012	0.198
	여	3(10%)	9(30%)	10(33.3%)	3(10%)	5(16.7%)		
연령	40세 미만	2(7.7%)	5(19.2%)	13(50%)	1(3.8%)	5(19.2%)	7.017	0.135
	40세 이상	1(4.2%)	8(33.3%)	9(37.5%)	5(20.8%)	1(4.2%)		
운영위원 경력	2년 미만	2(5.6%)	9(25%)	15(41.7%)	5(13.9%)	5(13.9%)	1.015	0.907
	2년 이상	1(7.1%)	4(28.6%)	7(50%)	1(7.1%)	1(7.1%)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장

학부모



<그림 IV-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장애요인에 대한 학교장, 학부모 인식 분포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장 및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장 경력별로는 유의확률이 0.034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d, f=10.434, p<0.05$) 학교장 경력이 5년 미만에서는 57.7%가 ‘참여의지 부족’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제시했는데 비하여, 5년 이상의 학교장은 50%가 ‘전문적 식견 부족과 비판적 시각’을 꼽았다. 그러나 5년 이상의 학교장의 경우에도 45.8%가 ‘참여의지 부족’을 그 다음 장애요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백분율을 내어 볼 때에, 학교장의 52%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4%가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부족과 비판적 시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청 지원부족’(8%),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 배타적 행태’(2%), ‘기타’(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 운영위원 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의 반응에서도 학교장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로 가장 많았고,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부족과 비판적 시각’이 34%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교육청의 지원부족’(12%),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 배타적 행태’(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각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 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 종합 논의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장의 인식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참여 인식

학칙 제정·개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모두 성별, 연령별, 경력별,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장이나 학부모 양쪽 모두 학칙 제정·개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학교 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결집하여 학칙 제정·개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학생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학교 예산·결산안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 예산·결산안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부모의 경우는 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는 견해에 상당수가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 학부모위원은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는데 상당수가 선호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학부모 두 집단간에 큰 인식의 차이는 없다.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학교 예산·결산안 심의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 볼 때, 학교 재정

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학교 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3)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 학교장의 경우에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즉, 59세 미만의 젊은 층의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59세 이상의 비교적 연령이 높은 학교장은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데, 상당수가 같은 인식을 보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집단내 인식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장과 학부모의 집단간 비교 분석에서 본다면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는 데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찬 학교 경영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의 참여, 즉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학교장-학부모, 교차분석 결과에서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상당 수, 제한적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은 교육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는 전문적 식견이 높은 학교 권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의 인식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심의·자문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견해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과 학부모 두 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모두 제한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학교장, 학부모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없는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아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문제는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학교장이나 학부모에게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지에 대하여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장과 학부모간의 인식의 차이는 있었다. 학교장의 경우는 '가능하면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학부모는 상당수가 제한적 참여 입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육경비의 학부모 부담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는 학부모들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전문적 분야는 전문적 식견이 높은 학교당국에 일임하고 학부모가 참여해야 할 부분은 가려서 참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학교재량활동·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재량활동·특별활동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장과 학부모의 집단 비교에서 볼 때, 학교장이나 학부모 공히 학교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제한적 참여 또는 부정적 견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학부모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운영 등은 전문적인 분야로 학교 당국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재량활동 운영에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이나 학교재량활동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교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아울러 학부모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으로 본다.

6) 교과용 도서,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참여 인식

교과용 도서나 교육자료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부모의 집단간 인식 비교에서 볼 때 교과용 도서나 교육자료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데 대해서는 양쪽 모두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서 선정이나 교육자료 선정에 전문적 지식이 적은 학부모에게 심의하고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조하여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고, 학교장의 경우는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과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7)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부모 집단간 인식 비교에서 보면,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학교장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하는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부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 참여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장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므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 경영자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교육비 수준의 결정 등은 실제 비용 부담의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되 운영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부모의 집단간 인식 비교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학교장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하는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한적 참여 입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학교장과 학

부모 모두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통하여 학교 정규 활동 이외에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직접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여 심의하고 자문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부모는 직접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고,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9) 학생 수련활동에 대한 참여 인식

학생수련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부모의 집단간 인식 비교에서 보면, 학교장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장은 학생 수련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교 당국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부모의 지나친 학교경영 참여는 오히려 소신 있는 경영자의 학교경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학부모의 깊은 생각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10) 초빙교원 임용에 대한 참여 인식

초빙교원 임용 시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의 경우에는 집단내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는 집단내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가 가능하면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 학부모는 초빙교원 임용 시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인식 분석에서 살펴보면, 학교장은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하는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하여, 학부모는 제한적 참여 입장에 있거나 여성 학부모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관리 능력이 없는 학부모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학교장은 현행 인사제도에서 교원 초빙 정책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한 제도의 정착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를 참여시켜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여지며, 학부모들은 직접 초빙에 동의해 본 경험은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초빙교원 임용 문제는 학교에 일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1) 학교 급식활동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급식 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 분석에서도 특별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 급식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학교장, 학부

모 상당수가 ‘반드시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 급식과 같은 실제 비용을 결정하거나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높은 참여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에 학부모의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초·중등교육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학교 발전과 교육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학교 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심의 등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12) 지역사회 교육방법에 대한 참여 인식

지역사회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의 경우에는 집단내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부모의 경우에는 집단내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간에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 학부모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참여해서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학부모의 경우는 제한적 참여 입장이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인식 비교에서 보면 학교장과 학부모는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장은 지역사회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데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학부모는 상당수가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교육방법에 관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전문가인 학교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13)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분석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양쪽 모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 집단 모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서, 학부모는 실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거나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높은 참여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장도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4)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참여 인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의 경우는 집단내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40세 이상의 학부모의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하여 상당수가 '가능하면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 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40세 미만의 학부모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학교장은 상당수가 '가능하면 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는 입장인데 비하여 학부모는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적 식견이 있는 학교에 일임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담경비 등 직접적인 부분만 참여하고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15) 교내 사고, 학교 민원사항에 대한 참여 인식

교내사고, 학교 민원사항에 관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의 경우는 집단내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운영위원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운영위원 경력이 2년 이상인 학부모의 경우는 교내 사고, 학교 민원사항에 관하여 상당수가 '가능하면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에 운영위원 경력이 2년 미만인 학부모의 경우는 상당수가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장과 학부모 두 집단 모두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교내 사고, 학교 민원사항 발생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모두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을 보아서 교육적 수혜자와 직접관계 있는 분야에는 참여 기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16) 학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참여 인식

학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의 경우에는 집단내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

별, 연령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학부모위원 보다도 여성 학부모위원이 학교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는 제한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이 40세 이상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분석에서도 양쪽 모두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두 집단 모두 학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 참여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사실로 본다면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교육의 전문적인 부분은 학교에 일임해야 한다는 뜻에서, 양 집단 모두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경영에 신중하게 선별하여 참여하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전 영역에 걸쳐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에는 제한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선별하여 참여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17) 학교 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인식

학교 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로 누구를 희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장,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분석결과, 학교장, 학부모 모두 제 1순위로 학교 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는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 을 들었다. 또, 학교장,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장이나 학부모 양쪽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학교 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는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알 수 있다.

18) 학교 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인식

학교 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로 누구를 희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장, 학부모 모두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석결과,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 학교 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들었다. 또,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인식의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에서 보여준 것처럼 학교장과 학부모의 인식이 너무나 일치한 것을 볼 때에 학교 발전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에서도 그 해답은 분명하다고 본다.

19)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에 대한 인식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로서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장, 학부모 모두 집단내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로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을 들었으며,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해 학부모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학교와 협력체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적임자로 생각된다.

20) 학교운영 위원회 운영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경우에 연령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장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구성원들의 참여 의지 부족’을 들었는가 하면, 5년 이상의 학교장은 ‘전문적 식견 부족과

비판적 시각'으로 보았다. 그러나 5년 이상의 학교장의 경우에도 45.8%가 '참여의지 부족'을 그 다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기에는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장의 경우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을 들었다.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집단간 분석에서도 양쪽 인식의 차이가 없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장애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위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해 본다면 학부모가 학교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도 매우 높고 신중했으며, 학교장도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즉 급식비 심의 등 학부모가 직접 교육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데, 학부모 상당수가 선호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운영 등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하여 제한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 영역에 걸쳐서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영역별로는 학교장과 학부모가 의견이 매우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영역도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장의 인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문헌고찰과 조사연구를 병행한 결과 하위 영역별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칙 제정·개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칙 제정·개정에 학교 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결집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예산·결산안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학교장은 학교재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 계획 수립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단 내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본다면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상당수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알찬 학교 경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분야에서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 식견이 높은 학교 권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모두 제한적 입장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문제는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 당국에 일임하고 교육경비 등 학부모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역만 선별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고유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학부모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면서 학교 고유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 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는다. 학교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특색 있는 학교경영이 될 것으로 본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사이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부모들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원과 협력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양쪽 모두 제한적 참여 또는 부정적 견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선별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학교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편성·운영에는 교과외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학부모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으로 본다.

교과용 도서 선정이나 교육자료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제한적 또는 부정적인 견해에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교과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을 높이고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방과후 교육 활동에 관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 학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약간의 인식 차이는 있으나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 교육활동이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미래 사회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갖게 하고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운영과 지원에 학교장과 학부모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약간의 인식 차이는 있으나 이 영역은 직접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함으로써 학교행사를 원활하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장이나 학부모 모두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정규활동 이외에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될 것이다.

학생 수련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이 영역에서는 교육경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함으로써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소신 있는 학교 경영자의 학교 운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초빙교원임용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특히 여성학부모) 사이에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중요성 때문으로 생각되며, 초빙교원의 임용 문제는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관리 능력이 없는 학부모가 개입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영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교급식활동에 대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할 것인 지에 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학교급식과 같은 실제 비용을 결정하거나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에는 학교 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심의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교 경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경영에 투명성 내지 합리화를 기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사회 교육방법과 관련사항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데 대해서 학교장과 학부모 사이의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은 지역사회 교육 방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전문가인 학교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적 식견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교육 방법을 좀 더 연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에 이바지하고 신뢰 받는 학교 경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데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에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경비를 지원하거나 결정하는 등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이므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도록 함으로서 학교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좀 더 가까이 에서 학교 경영을 이해하게 되므로 학교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내사고, 학교 민원사항 발생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모두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에 교육적 수혜자와 직접관계 있는 분야에는 참여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교장은 가급적이면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모두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학부모가 학교 경영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선별하여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고 본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주체, 학교발전 기금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책임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을 알아보는 질문에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인식이 너무나 일치한 것을 볼 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책임자를 뽑아서 학교 경영에 학부모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을 위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분석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 해 볼 때에 학부모가 학교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성향도 높고 신중했으며 학교장도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역에 따라서는 학부모의 참여 요구와 학교장의 인식간에 차이를 나타낸 분야도 있었다. 특히 학부모가 교육 경비를 결정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등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양쪽 모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여 심의·자문해야 한다.'는 데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운영 등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학교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경영 전 영역에 걸쳐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학교 경영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면서 교육의 전문가인 학교 고유의 권한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또 학교 경영에 대한 교육적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먼저 학부모의 참여요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학교 경영에 대하여 학부모의 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넓혀서 열린 학교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장은 학교 경영을 보다 민주화, 투명화 하고 학생들의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학부모 역시 학교 경영에 지나친 참여 요구와 간섭은 소신 있는 학교 경영자의 학교 운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여에 신중을 기하고, 교육에 대한 권리의 주장뿐만 아니라 참여와 지원을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에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는 학교 경영의 책무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끝으로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활동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가까이 에서 접할 수 있게 되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장은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를 통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분석과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 성향은 전 영역에 걸쳐서 높고 신중하였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 경영에 대한 교육적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를 학교장도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영역에 따라서는 학교장이나 학부모 양쪽 모두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하여 제한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학교에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의 참여 요구와 학교장의 수용 태도간의 간격을 좁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먼저 학부모의 참여 요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학교 경영에 대하여 학부모의 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넓혀서 열린 학교 경영을 할 때에 학부모의 참여 기대는 높을 것이며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지나친 참여나 간섭은 소신 있는 학교 경영자의 학교 운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학부모는 학교경영 참여에 있어서 참여의 내용, 참여의 범위, 참여의 정도 등에서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들도 단위학교 교육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즉 참여 요구와 지원을 통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장은 학교 경영을 보다 민주화, 투명화 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학부모를 참여시켜 학교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학교장은 학부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

다.

여섯째, 학부모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도 이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것을 결과 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의 특수성이나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 조사 등을 통하여 특성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특성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일곱째, 학부모는 교육에 대한 권리의 주장뿐만 아니라 참여와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지도는 물론 학교 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활동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되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장은 학부모의 활발한 학교경영 참여를 통해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힘 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법전 편찬회, 교육법전, 서울:교학사, 2001,p.16.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을지문화사,1996,p.9.
- _____,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Ⅱ,서울:사회교육문화사,2000,p.12.
- 김명수, 「교장의 리더십과 창의적 학교경영 기법」,학교경영 제12권 제1호, 1999.1,p.187.
- 김인회,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서울:문음사,1993,pp.300-301.
- 김종철, 한국교육정책 연구,서울:교육과학사,1990,p.86.
- 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노종희,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과제와 전망」,교육월보 3호1995,pp.20-27.
- 박태우, 「한국교육법 원리의 법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 배종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유현숙, 정태화,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경영 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8,pp.27-30.
- 이득기, 「주요국의 교육행정 결정과정에서 기초한 한국의 교육정책 모형 개발」, 비교교육 제4호 1993. 6,p.209.
- 이충원, 외국의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충북교육위원회 토론회자료,2000,pp. 14-20.
- 정태범, 교육행정학,서울:정민사,1996,p.208.
- _____,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서울:양서원,1998,pp.185-186.
- 조성일, 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서울:양서원,1996,p.321.
- 주삼환, 장학 교장론 특강,서울:성원사,1989,p.23.
- 최희선, 「학교단위책임경영제 왜 필요한가?」,교육월보 3호,1995 .3,pp.28-31.
- 한국교육행정학회, 학교·학급경영록,서울:도서출판 하우,1995,p.458.

ABSTRACT

A Study on the Outlook of Parents and Principals on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Administration Through Boards of School

Son Jun-ki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ju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hin He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arents and principals perceived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administration through boards of school. After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The parents investigated felt the high need for their own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and took a discreet attitude toward that. And the principals investigated also thought their demand was reasonable and, accepted it. But they had a different view in some areas. Both groups mostly agreed that school had to

have a discussion with parents about matter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m, who were clients, such as educational expenses, and had to seek their advice. But regarding what called for professional knowledge, including curriculum management, they didn't consent to parent involvement, or found it necessary for parents to participate just in part. It's perhaps because both groups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chool management and didn't think it's advisable for parents who were devoid of expertise in education to intervene in professional matters, as students must be exposed to quality education. Overall, however, it was evident that parents were expected to take part in every matter about school management in part at least. Principals should try to allow parents to be involved with school management as much as possible,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 unique authorities of school. They should gather extensive opinions from parents to find out what they expect from school, and embrace their needs. To make school management transparent, parents should be given wider chances to gain access to that, and school should be run in a democratic way to improve its performance and have students deploy their ability. Also, principals should take a careful listen to parents, and parents also should be discreet not to overly intrude upon school managers, since it might have an adverse impact. They should advocate their children's rights for education and lender

assistance to school education. Parents would be able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school when they take part in school management and observe how education is conducted, and principals should put every possible effort into encouraging parents to pay more attention to school management as a way to reinforce their mutual collaboration and provide better education.

부 록

- I.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요구 조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작성용)

- II.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조사
(학교장 작성용)

설문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작성용)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요구 조사◆

학교운영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손준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학교경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서 활동해 보신 경험적 관점에서 운영위원님의 평소 생각을 정성껏 답해 주시면 본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 4.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손준기 드림

기 초 조 사

☞ 다음 사항중 위원님의 해당란에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②여()
2. 연령 : ①40세 미만() ②40세 이상()
3. 운영위원 경력 : ①2년 미만() ②2년 이상()

**** 표시하는 방법 ****

다음 질문에 대하여 운영위원님의 생각에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항 번 호	설 문 내 용	만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한다.	제한적으 로 그렇게 해야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4	3	2	1
1	학칙 제정·개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학교교육계획 수립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학교재량활동 관련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특별활동(자치,적응,계발,봉사, 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교과용 도서 선정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교육자료 선정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번 호	설 문 내 용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한다	제 한 적 으 로 그렇게 해야한다.	그렇게 할 필요 가 없다
		4	3	2	1
11	방과후 교육활동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전학년이 참여하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방학중 교육활동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각종 학생수련활동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학교급식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지역사회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설치·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학교경영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운영위원회.
- ___ ②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 ___ ③ 학교장.
- ___ ④ 예산·회계 담당자.
- ___ ⑤ 기타.

23.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운영위원회.
- ___ ②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 ___ ③ 학교장.
- ___ ④ 예산·회계 담당자.
- ___ ⑤ 기타.

2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___ ② 학교장.
- ___ ③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 ___ ④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___ 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2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이고 배타적 행태.
- ___ ②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
- ___ ③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
- ___ ④ 교육청의 지원 부족.
- ___ ⑤ 기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 (교장선생님 작성용)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조사◆

교장선생님, 학교경영 및 아동 교육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저는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손준기입니다.

항상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며, 늘 바쁘신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설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요구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생각을 조사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의 생각을 정성껏 답해 주시면 본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 4.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손준기 드림

기 초 조 사

☞ 다음 사항중 위원님의 해당란에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②여()
2. 연령 : ① 59세 미만 () ②59세 이상()
3. 학교장 경력 : ① 5년 미만() ②5년 이상()

**** 표시하는 방법 ****

다음 질문에 대하여 교장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항 번 호	설 문 내 용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한다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	그렇게 할 필요 가 없다
		4	3	2	1
1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칙 제정·개정 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 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 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				
3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교육계획 수 립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 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교육과정 운 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교육과정 운 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교육과정 운 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7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재량활동 관 련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 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8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특별활동(자치,적 응,계발,봉사,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9	교장선생님께서서는 교과용 도서 선정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 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교장선생님께서서는 교육자료 선정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 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항 번 호	설 문 내 용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한다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4	3	2	1
11	교장선생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교장선생님께서 전학년이 참여하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교장선생님께서 방학중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교장선생님께서 각종 학생수련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교장선생님께서 초빙교원 임용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교장선생님께서 급식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교장선생님께서 지역사회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교장선생님께서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경영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학부모가 참여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운영위원회.
- ___ ②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 ___ ③ 학교장.
- ___ ④ 예산·회계 담당자.
- ___ ⑤ 기타.

23.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운영위원회.
- ___ ②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 ___ ③ 학교장.
- ___ ④ 예산·회계 담당자.
- ___ ⑤ 기타.

24.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___ ② 학교장.
- ___ ③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 ___ ④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___ 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25.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이고 배타적 행태.
- ___ ②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
- ___ ③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
- ___ ④ 교육청의 지원 부족.
- ___ ⑤ 기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